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

제 출 일 : 2026. 8. 31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23조(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위탁사무 내용

○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

3. 위탁시설 개요

가. 재계약 7개소

연번	어린이집명	위탁체	소재지	규모(㎡)	정원(명)	위탁기간
1	도촌	권O영	비룡로 1276	175	38	2027. 1. 1. ~ 2031. 12. 31.
2	오남복지	홍O경	오남읍 진건오남로 806-28	244.8	46	2027. 1. 1. ~ 2031. 12. 31.
3	토리	유O숙	별내4로7	185.22	38	2027. 1. 1. ~ 2031. 12. 31.
4	더샵	황O주	진접읍 부평로48번길 140,	299.2	60	2027. 1. 3. ~ 2032. 1. 2.
5	다산 푸르지오	김O정	다산중앙로82번안길 74	392.7	80	2027. 1. 10. ~ 2032. 1. 9.
6	푸른들보듬이 나눔이	김O정	오남읍 진건오남로 550번길 41	593.39	80	2027. 1. 18. ~ 2032. 1. 17.
7	별꽃	안O정	순화궁로 18	286.56	53	2027. 1. 20. ~ 2032. 1. 19.

나. 신규위탁 1개소

연번	어린이집명	신규위탁 사유	소재지	규모 (㎡)	정원 (명)	위탁기간	비고
1	(가칭) 다산지금 A-3BL 어린이집	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	다산동 6111	247.71	49 (예정)	개원일로부터 5년 (2027.7. 개원 예상)	`26. 3차(예정) 수탁자심의 위원회

※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공동주택

사 업 명	사업시행자	연면적 (㎡)	세대수	동수	사용검사 예정월	비고
다산지금 A-3BL 통합공공임대주택	경기도시 주택공사 (GH)	64,008.79	518	3	2027.4. 예정	

다. 재위탁 4개소

연번	어린이집명	현 위탁체	소재지	규모 (㎡)	정원 (명)	위탁기간	비고
1	푸른숲	강O희	송산로 307번길 22	237.06	55	2027. 1. 20. ~ 2032. 1. 19.	`26. 3차(예정) 수탁자심의 위원회
2	한별	박O경	별내4로 7	381.89	79	2027. 1. 1. ~ 2031. 12. 31.	
3	퇴계원	최O춘	퇴계원면 경춘북로 558번길 10-2	313.195	73	2027. 1. 10. ~ 2032. 1. 9.	
4	별내 아이파크	이O설	덕송1로 30	253.87	59	2027. 1. 20. ~ 2032. 1. 19.	

4.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**(재계약)** 현 위탁체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

사전평가 (공신력, 운영실적, 전문성, 재정능력) ⇨ **만족도 설문조사** (부모·교사) ⇨ **회계서류 등 지도·점검** ⇨ **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** (서류심사 및 제안발표) ⇨ **의회동의** ⇨ **위·수탁 계약 체결**

※ 최종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,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 추진

○ **(신규위탁/재위탁)**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

의회동의 ⇨ **공개모집** ⇨ **1차 서류 심사** (공신력, 운영실적, 전문성, 재정능력) ⇨ **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** (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실적, 전문성) ⇨ **위·수탁 계약 체결**

※ 최종결과 70점 이상, 1·2차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결정

5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운영재원 :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

○ 소요예산 : 9,106,011천원(2026년도 시립어린이집 예산 기준)

(단위 : 명, 천원)

연번	어린이집명	정원	보육 교직원	소요예산 및 산출내역		
				계	인건비 (보육교직원)	운영비 (관리운영비, 보육활동비 등)
계				9,106,011	5,827,771	3,278,240
1	도촌	38	12	595,503	432,325	163,178
2	오남복지	46	13	799,768	509,607	290,161
3	토리	38	12	605,318	425,008	180,310
4	더샵	60	20	957,385	700,252	257,133
5	다산 푸르지오	80	19	1,033,613	683,999	349,614
6	푸른들보듬이 나눔이	80	19	1,163,175	647,653	515,522
7	별꽃	53	11	549,303	398,740	150,563
8	푸른숲	55	9	654,127	394,575	259,552
9	한별	79	15	942,505	516,129	426,376
10	퇴계원	73	16	1,004,460	641,571	362,889
11	별내 아이파크	59	12	800,854	477,912	322,942

6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시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, 법적 건전성,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보육사업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 도모
경제적 효율성	○ 운영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등을 적극 활용

구 분	검 토 의 견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회계점검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운영비 정산보고,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

7. 재계약 대상 성과평가 결과

연번	어린이집명	최종 결과	계* (100점)	1차 평가(40점) 사전평가, 부모·교직원 만족도 조사, 회계점검	2차 평가(60점)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
1	도촌	적격	89.8	39	50.8
2	오남복지	적격	87.6	39	48.6
3	토리	적격	77.8	36	41.8
4	더샵	적격	83.6	37	46.6
5	다산 푸르지오	적격	83.4	39	44.4
6	푸른들보듬이 나눔이	적격	93.6	39	54.6
7	별꽃	적격	83.4	37	46.4

*가산점(최대2점) 포함 점수

8. 향후계획

○ 2026. 9. ~ 10. : (재위탁4개소)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접수
○ 2026. 10. : 2026년 제3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탁체 선정
○ 2026. 12. : (재위탁 4개소) 시립어린이집 위·수탁 계약체결
○ 2026. 12. : (재계약 7개소) 시립어린이집 위·수탁 계약체결
○ 2027. 상반기 : (신규위탁 1개소) 시립어린이집 위·수탁 계약체결

9. 기타사항

○ 재계약 대상 시립어린이집 성과평가 세부내역 [붙임1]
○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 [붙임2]
○ 관련 법령 [붙임3]

붙임1 재계약 대상 시립어린이집 성과평가 세부내역

○ 심 의 일 : 2026.6.23.(2026년 제2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)
○ 심의위원 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7명

구분	심사항목		배점	어린이집명						
				도촌	오남복지	토리	더샵	다산푸르지오	푸른들보듬아늠이	별꽃
계			100	87.8	85.6	75.8	81.6	81.4	91.6	81.4
가산포함합계			102	89.8	87.6	77.8	83.6	83.4	93.6	83.4
1차평가	점수(40점)		40	37	37	34	35	37	37	35
	가점포함점수(최대+2점)		42	39	39	36	37	39	39	37
	1.운영체의 공신력		10	8	8	10	8	8	10	8
	2. 운영체의 운영실적	회계관리의 적절성	4	4	4	4	4	4	4	4
		만족도조사 (부모・교사)	9	9	8	7	7	8	9	9
		취약보육운영	3	3	3	2	2	3	2	1
		열린어린이집	1	1	1	1	1	1	1	1
		시책사업 운영	가점(2)	2	2	2	2	2	2	2
	3. 운영체의 전문성	업무경력	7	7	7	7	7	7	7	7
		포상 및 공모 사업 실적	1	1	1	-	1	1	1	-
	4.운영체의 재정능력		5	4	5	3	5	5	3	5
2차평가	[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] 1.운영체의 운영실적 2.어린이집 운영계획 3.운영체의 전문성		60	50.8	48.6	41.8	46.6	44.4	54.6	46.4

* 위원별 배점 결과, 최고 ·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운영체 위탁 선정

**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

붙임2-1 시립어린이집 위탁체(신규 · 재위탁) 심사 기준

[1차 정량평가]

심사항목	총점	세부항목		배점	
합 계	30				
1. 운영체의 공신력	10	도덕적·법적 공신력 (10)	- 운영체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 처리 실태 (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) ·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· 지적(시정명령·개선명령 등)사항이 1건 이상, 2건 이하인 경우 · 지적(시정명령·개선명령 등)사항이 3건 이상인 경우 (추가1건당 0.5점 감점) ※ 국가·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(단,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)은 10점 부여	10점 8점 7.5점	
2. 운영체의 운영실적	5	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(2)	- 취약보육(영아, 장애아, 다문화, 그 밖의연장형) 및 시간제보육,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 · 3개 이상 운영 · 2개 운영 · 1개 운영	2점 1점 0점	
		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(3)	- 관내 어린이집 근무경력 · 10년 이상 · 5년 이상 ~ 10년 미만 · 5년 미만	2점 1점 0점	
			- 최근 5년이내 자원봉사 실적 · 50시간 이상 · 없음	1점 0점	
		시책사업 운영 (가점)	- 시책사업 운영 시 가점 · 1년간 운영 · 2년 이상 운영	+1점 +2점	
3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10	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(7)	· 10년 이상 · 7년 이상 ~ 10년 미만 · 5년 이상 ~ 7년 미만 · 3년 이상 ~ 5년 미만 · 3년 미만 ※ 경력인정 : 시설장 100%,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(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) 종사자 70%	7점 5점 3점 2점 1점	
		원장의 전공 (2)	- 유아교육·(영)유아보육·아동학 전공자 ·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· (전문)학사 학위 취득한 자	2점 1점	
		최근 5년 이내 공모사업 수상실적 (1)	· 있음 · 없음 ※ 장관, 도지사, 시장, 한국보육진흥원장 수상실적 인정	1점 0점	
4. 운영체의 재정능력	5	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(5)	<단체·개인> · 2억 이상 · 1억 이상 ~ 2억 미만 · 1천만원 이상 ~ 1억미만 · 1천만원 미만	<법인> · 5억 이상 · 3억 이상 ~ 5억 미만 · 1억 이상 ~ 3억 미만 · 1억 미만	5점 4점 3점 2점

[2차 정성평가]

심사항목	총점	세부항목		배점
합 계	70			
1. 어린이집 운영 계획	40	보육사업 계획 (10)	·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·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·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· 참신성, 전문성,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 적합성	**(우수)** 10~8점 **(보통)** 7~5점 **(미흡)** 4점 이하
		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, 평가에 관한 계획 (10)	·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, 평가에 관한 계획 * 보육프로그램,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, 재정지원, 회계·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· 운영계획의 구체적, 타당성, 이행가능성 여부	**(우수)** 10~8점 **(보통)** 7~5점 **(미흡)** 4점 이하
		예산의 적절성 (10)	· 세입·세출예산 편성의 적절성 (세입항목) 보육료수입, 수익자부담금, 인건비 보조금, 보육료보조금, 기본보조금, 기타지원금 (세출항목) 인건비, 업무추진비, 기타운영비, 급간식비, 행사비, 수익자부담금지출, 전출금	**(우수)** 10~8점 **(보통)** 7~5점 **(미흡)** 4점 이하
		어린이집의 건강·급식·위생·안전관리의 적절성 (5)	·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(성폭력·아동학대 예방교육,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 교육,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, 재난대비 안전교육, 교통안전교육 등) · 건강·영양·위생 및 급식관리 계획의 적정성	**(우수)** 5~4점 **(보통)** 3점 **(미흡)** 2점 이하
		지역사회 연계 및 교직원 전문성 강화 (5)	·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방안 및 부모에 대한 서비스의 적정성 ·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 및 기회제공	**(우수)** 5~4점 **(보통)** 3점 **(미흡)** 2점 이하
2. 운영체의 운영실적	5	운영체의 운영실적 (5)	·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·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※ 국가·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(단,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)은 5점 부여	**(우수)** 5~4점 **(보통)** 3점 **(미흡)** 2점 이하
3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25	시립어린이집 운영능력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(10)	·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·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(전문자격증 보유, 연구논문, 표창) ※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장관, 도지사, 시장 표창 인정	**(우수)** 10~8점 **(보통)** 7~5점 **(미흡)** 4점 이하
		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/ 운영의지 / 향후 발전계획 (15)	·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	**(우수)** 15~13점 **(보통)** 12~10점 **(미흡)** 9점 이하

· 제외대상(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): ▲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, ▲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, ▲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, ▲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·단체, ▲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· 위원별 배점 결과,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위탁 선정함. 단,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.

·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,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, 위탁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함

붙임2-2 시립어린이집 위탁체(재계약) 심사 기준

[1차 정량평가]

심사항목	총점	세부항목		배점	
합 계	40				
1. 운영체의 공신력	10	도덕적·법적 공신력 (10)	· 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*이 양호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· 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*이 양호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경우 · 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*이 우려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경우 * 위탁 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 ※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부적격 처리(위탁 취소)	10점 8점 6점	
2. 운영체의 운영실적	17	회계관리의 적절성 (4)	- 위탁기간 내 재무회계 점검결과(수입·지출 원칙, 시립어린이집 예산편성 기준 준수) · 우수 · 보통 · 미흡	 4점 2점 0점	
		어린이집 만족도조사 (9)	- 부모 만족도조사(10항목×5점=50점) *소수점 이하 반올림 · 90% 이상 (45점 이상) · 80% ~ 89% (40점 ~ 44점) · 70% ~ 79% (35점 ~ 39점) · 70% 미만 (34점 이하) ※ 단, 회수율이 70%미만인 경우	 6점 5점 4점 3점 2점	
			- 보육교직원 만족도조사(10항목×5점=50점) *소수점 이하 반올림 · 90% 이상 (45점 이상) · 80% ~ 89% (40점 ~ 44점) · 79% 이하 (39점 이하) ※ 단, 회수율이 70%미만인 경우	 3점 2점 1점 0점	
		취약보육 실시 (3점)	- 취약보육(장애아통합 포함),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· 위탁기간 내 3년 이상 · 위탁기간 내 1년 이상 ~ 3년 미만 - 취약보육(장애아통합 미포함), 시간제보육 중 3개 이상 실시 - 취약보육(장애아통합 미포함), 시간제보육 중 2개 실시 - 취약보육, 시간제보육 중 1개 이하 실시	 3점 2점 2점 1점 0점	
		열린어린이집 지정 (1)	·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서 접수일 기준,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	1점	
		시책사업 운영 (가점)	- 시책사업 운영 시 가점 · 1년간 운영 · 2년 이상 운영	 +1점 +2점	
3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8	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(7)	· 10년 이상 · 5년 이상 ~ 10년 미만 · 3년 이상 ~ 5년 미만 ※ 경력인정 : 시설장 100%,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(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) 종사자 70%	7점 5점 4점	
		포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(1)	· 위탁기간 내에 보육 관련 포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있는 자 ※ 장관, 도지사, 시장 표창에 한하며, 공모사업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 수상실적까지 인정	1점	
4. 운영체의 재정능력	5	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(5)	<단체·개인> · 2억 이상 · 1억 이상 ~ 2억 미만 · 1억 미만	<법인> · 5억 이상 · 3억 이상 ~ 5억 미만 · 3억 미만	5점 4점 3점

[2차 정성평가]

심사항목	총점	세부항목		배점
합 계	60			
1. 운영체의 운영실적	13	시설 운영 관리 (8)	·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교직원 관리 ·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·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 정도	(우수) 8~6점 (보통) 3~5점 (미흡) 2점이하
		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(5)	·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	(우수) 5점 (보통) 4점 (미흡) 3점이하
2. 어린이집 운영계획	25	보육사업계획 (10)	·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·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·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· 참신성, 전문성,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 적합성	(우수) 10~8점 (보통) 7~5점 (미흡) 4점이하
		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, 평가에 관한 계획 (5)	·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, 평가에 관한 계획 * 보육프로그램,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, 재정지원, 회계·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· 운영계획의 구체적, 타당성, 이행가능성 여부	(우수) 5점 (보통) 4점 (미흡) 3점이하
		예산의 적절성 (5)	· 세입·세출예산 편성의 적절성 (세입항목) 보육료수입, 수익자부담금, 인건비 보조금, 보육료보조금, 기본보조금, 기타지원금 (세출항목) 인건비, 업무추진비, 기타운영비, 급간식비, 행사비, 수익자부담금지출, 전출금	(우수) 5점 (보통) 4점 (미흡) 3점이하
		어린이집의 건강·급식·위생·안전관리의 적절성 (5)	·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(성폭력·아동학대 예방교육,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교육,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등 보건위생 관리교육, 재난대비 안전교육, 교통안전교육 등) · 건강·영양·위생 및 급식관리 계획의 적정성	(우수) 5점 (보통) 4점 (미흡) 3점이하
3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22	시립어린이집 운영능력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(12)	·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·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(전문자격증 보유, 연구논문, 표창)	(우수) 12~10점 (보통) 9~6점 (미흡) 5점이하
		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/ 운영의지 / 향후 발전계획 (10)	·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	(우수) 10~8점 (보통) 7~5점 (미흡) 4점이하

· 제외대상(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): ▲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, ▲최근 5년 이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상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, ▲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, ▲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·단체,
▲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· 위원별 배점 결과,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운영체를 위탁 선정한다. 이 경우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한다.

붙임3 관련 법령

○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② **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**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○「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23조(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)

① **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·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**
② 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③ 법인과 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④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, 수탁자선정 공고 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.
⑤ 시립어린이집의 **위탁기간은 5년**으로 하고, **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** 다만,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○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1. **위탁기간의 변경**
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3.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※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법령

○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9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)

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**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**으로 한다.